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1, 2010. 2, pp. 263-289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 선 영 +
(한국재활복지대학)
공 상 길
(강남대학교)
임 은 경
(성공회대학교)
천 덕 희 ++
(동원대학)
오 영 림
(서울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민감성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의식을 살펴보고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 38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390명의 인권민감성을 비교•조사하였다. 그 결과,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종사자들의 학력별 인권민감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책별 인권민감성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교육 유무별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랑인복지시설 내의 인권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례화 되어야 하고 종사자들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침해상황과 관련된 사례나열식 인권교육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부랑인, 부랑인복지시설, 인권민감성, 인권옹호

+ 주저자
++ 교신저자

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부랑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동안의 부랑인에 대한 사회정책은 주로 사회질서 차원의 보호대책[1]이었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이전의 사회통제와 수용보호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같은 해 4월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2]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부족했었다. IMF 이후 경제위기 및 침체로 노숙인과 부랑인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3]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부랑인의 인권에 관한 논의 역시 형제복지원과 관련하여 강제수용과 착취, 학대 등 인권유린의 문제[4]가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선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랑인의 인권은 1990년 이후 결혼 이주 여성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의 문제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시각을 통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랑인복지사업안내'에서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는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부랑인복지시설은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대상자들을 '부랑인'이란 범주로 통합하여 보호, 수용하고 있다. 일정한 안정적인 주거가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자원체계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생활의 재생산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규칙적 생활의 어려움,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이 위생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랑인들은 극심한 생활상의 위기를 경험한 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관심을 받아야하는 부랑인 특히 사회복지 시설 생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곤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랑인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은 시설의 입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인 부랑인 입장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지적이고 옹호적인 역할을 수행과 함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1)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 신고, 단속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975.12.15
2)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3) 우리나라의 경우 부랑인과 노숙인의 개념이 모호하게 중첩이 되어 있다. '노숙인 및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부랑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 기간 거리를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2조에 의하면, "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4) 신동아 87년 3월호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시설의 욕구와 부랑인의 욕구가 상충될 때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선택과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적 선택이 상충될 때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부랑인 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으나 인권개념과 인권적 실천원칙들의 추상성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인권이라는 이슈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실태나 행동수칙과 같은 당위적인 내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현실적으로 인권의식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간과되고[5] 있는 실정이다. 인권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없이는 인권옹호의 본질적 행동을 이끌어내기는 힘든 일이다. 인권은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실천의 차원으로 옮겨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의 옹호자임과 동시에 침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의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권민감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랑인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살펴보고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을 위한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2. 이론적 배경

1) 부랑인의 개념 및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1) 부랑인의 개념 및 특성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정부정책의 변천에 따라,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낙인론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랑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부랑인 및 노숙인 설치·운영규칙」에서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직후인 1980년대 후반의 부랑인에 대한 개념정의로 차흥봉(1987)은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한 기간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구걸을 하거나 노숙을 하는 자로 정의했으며, 김성이(1990)는 부랑인이라 함은 심신장애자로서 보호가정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장기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김태준(2007)은 부랑인은 신체적, 정신적 및 가족해체,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정한 생활의 수단이나 공간이 없이 거리를 해매면서 구걸을 하는 자로서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원하나 가족이나 사회는 부랑인들의 과거의 생활태도의 편견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에 이르러 부랑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유사한 관점을 갖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부랑인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류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5) 국가인권위원회, 2002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랑인의 특성에 대해 Stoner(1995)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적 장애가 있는 자, 심 한 개인적 위기를 경험한 자, 경제적 실패로 고통을 당한 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결여된 자로서 스스로를 옹호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⑵ 부랑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부랑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진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조사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내부자료, 2008. 1)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전국에 38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서울 지역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남녀를 혼합하여 보호하고 있다. 전체 9,722명 중 26.4%인 2,033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실 거주자인 7,689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65세 이상이 15.3%인 1,175명으로 이미 부랑인복지시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진입(2018년 예상)보다 빨리 고령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시설의 규모별로 보면 1,500명 거주하는 시설로부터 50명이 거주하는 시설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개소 이상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에 6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시설 생활인을 상태별로 보면 정신장애가 3,451명인 44.9%로 가장 많았고 이들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의 비율도 31.6%로 나타나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007년 말 현재 778명으로 조사되었다.(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내부자료, 2008.1)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복지시설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사회복지사 채용이 강화되었는데 2007년 말 현황에서도 사회복지사인 생활복지사가 211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4.7%이며, 직접적인 케어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도 209명으로 이들도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자격증 보유 현황에서도 전체 종사자 854명 중 자격증 보유자는 546명으로 63.9%가 자격증 소지자이며 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가 367명으로 67.2%나 되었다.

2) 인권과 인권민감성의 개념

⑴ 인권과 인권의식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로서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권이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주한수, 2005).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자유권, 사회권과 밀접한 연관성 갖는 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은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에는 인신에 관한 자유권(헌법제12조),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헌법제16조,18조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헌법제20, 21조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헌법제22조)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요약된다.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법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에 의한 평등권 위반' 및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 한다(사회권연구모임, 2002). 그러나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권에 대한 규정과 다르게 인권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을 갖는다. 인권의 보편성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인권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권의 불가분성은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개별적의 인권은 어떤 다른 인권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한 관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인권을 선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다른 인권의 부인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2008).

인권의 두 개념과 연관하여 우리나라의 부랑인의 인권에 관점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이 1987년 형제복지원사건이다. 이는 부랑인시설이 부랑인의 재활이라는 관점보다는 일반인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부랑인의 인권적 고려가 배제된 상황을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그 사건이후 부랑인시설의 인권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현재까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태영, 2001; 정원오, 2002; 이현준, 2003). 국회인권포럼의 1998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는 부랑인시설은 사회질서의 유지, 타인의 자유침해 방지, 개인의 자유권 보장 문제 등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였고 이들을 격리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재활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정규(1979)는 의식구조를 개인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하고, 지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인지적 의식구조와 태도, 가치관, 도덕성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이용호(1981)는 의식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며 실제행동의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권의식은 상황을 인권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가와 이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권옹호와 인권민감성

인권민감성은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인권적 옹호행위를 결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사고과정이다. 옹호적 역할은 사회복지 임무의 기본으로서 사회복지 옹호는 "사회정의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인, 집단 혹은 지역사회 편에서 운동과정을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방어하고, 개입하고,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Mickelson, 1995). 옹호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실현하거나, 자격이나 수혜를 받는데 제한을 가하는 장애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raford W. Sheafor, 2004). 결국 인권옹호라 함은 인권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장애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현황(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4)을 살펴보면 근무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부랑인 시설종사자들이 부랑인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부랑인을 무기력한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편견은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즉 이는 부랑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이 인권침해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중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되는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종사자들의 인권인식의 부족이 주요결과로 나온 것(국가인권위원회,2003)도 이와 무관 하지 않다. 인권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의식은 법조항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여 지는 실천적 의미의 인권인식에 기반법 조항, 즉 인권 인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 내용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딜레마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옹호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교감'을 제시하였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인권옹호행위 실천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정선영, 2006 재인용: 강지영, 2002).

Rest(1983)는 인권 옹호 행동을 위한 네 가지 심리적 과정으로서 첫째는 인권민감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는 인권에 대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는 인권에 대한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넷째는 인권옹호 행동과 관련된 성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과정으로 개인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인내심과 의지 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인권민감성이란 인권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민감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권민감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정선영, 2006 재인용: 국가인권위원회,

2002). 정선영(2006)은 인권지각능력을 상황지각능력, 결과 지각 능력, 책임지각능력으로 구분하는데 상황 지각능력은 어떤 상황을 인권적 상황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은 의미하며, 결과지각능력은 정서적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를 생각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상황 안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지각하고 이를 실제행동으로 옮기는 의지를 책임지각능력으로 본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인권민감성은 인권상황지각능력을 통한 결과지각능력이 책임지각능력과 만나면서 인권에 대한 민감성 정도가 결정된다(정선영, 2006 재인용: 문용린 외, 2002).

3) 선행연구

부랑인에 대한 국내연구는 1998년 IMF위기 이후 출현한 실직 노숙인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랑인복지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로 부랑인시설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인권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타 분야의 인권민감성의 연구 중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 정선영(2006)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관 내에서에서의 직종과 인권교육경험 유무, 그리고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김충희(2001)는 직종이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지영(2002)은 인권의식과 인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갖는데 있어 인권교육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양옥경(2007)은 시각의 전환과 사고의 변화를 위한 인권관점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인권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인권관점을 교육하고 인권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민감성 훈련을 제공하며 인권에 기반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실천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부랑인 시설의 문제와 인권을 다룬 국내논문으로는 김현옥(1999)은 한국·미국·일본의 부랑인 발생원인과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에서 부랑인복지의 원칙 중 인권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박태영(2001)은 부랑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복지의식 영역, 제도적인 영역, 시설운영영역으로 나누었는데, 복지의식영역은 부랑인복지시설 관계자의 매너리즘과 소진 현상,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등이 포함된다. 정원오(2002)는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평가 결과에서 부랑인복지시설은 '존재 그 자체'에 이미 인권침해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낮은 운영비나 노후한 시설, 인력부족에 따른 사회권적 인권침해 소지는 상존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현준(2003)은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기능평가에 따른 서비스개선방안에서, 획일화된 시설 목표보다는 개별 생활인 수준에 맞춘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족한 인력충원, 적절한 프로그램의 시행, 시설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권의식과 실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는 이원웅(1996)은 인권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교육, 보건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기수(2006)가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권개입 수준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부랑인의 인권에 관한 국외연구로는 Marilyn Reitz-Pustejovsky(2002)는 사회복지기관의 도덕적인 의무에 관한 연구에서 부랑인 들이 사회에서 바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요구를 다시 재정립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의 도덕적 관념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주는 것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에 대한 증진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보호이며, 시설 종사자는 부랑인들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처럼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들과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tricia Siebert(1986)는 부랑인과 인권민감성 연구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존재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부랑인일지라도 그들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일을 갖고 싶어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Micha de Winter and Marc Noom(2003)은 부랑인 청소년과 전문가의 전문적인 보호의 관계 연구에서 전문가는 부랑인에게 전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닌, 독립과 도움을 평형되게 유지해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에서 성숙한 신뢰관계와 자문이 중요하며 이런 분위기는 전문가의 믿음에 의한 대화 안에서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랑인시설의 단순한 인권실태파악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기 위해 인권상황을 판단하고 보다 인권실천의 입장에 있게 되는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민감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민감성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인권교육경험 및 인권관련권리장전을 인식여부에 따라 인권민감성이나 인권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정선영, 2006; 이충희, 2001, 이원웅, 1996) 본 연구에서도 연구문제로 선정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랑인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을 파악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1) 종사자의 인권민감성은 어떠한가?
2)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성별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종사자의 직책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부랑인복지시설의 근무경력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5) 종사자의 학교교육과정, 근무 중에 인권교육이수 유무 및 참여방법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6) 직장 내 부랑인을 위한 권리장전(지침) 유무에 따라 인권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전국 38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에 대해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부랑인복지시설에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전체 시설이 그 취지에 동의하여 38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우편조사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1개 시설에서 390부가 회수되었으며 모두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랑인복지시설을 지역별로 대상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대상자 수

지역별	대상시설	대상자 수(명)
계	31	390
서울	3	82
부산	1	9
대구	1	50
인천	1	18
대전	1	10
경기	3	31
강원	3	24
충북	1	16
충남	1	12
전북	3	22
전남	6	46
경북	1	15
경남	4	39
제주	2	16

2)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측정도구는 2002년 인권위원회에서 개발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문제의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검사방식은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 10개를 읽어보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문항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에피소드 내용은 국내에서 인권침해상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연령별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된 것이다. 도구의 I번 질문은 인권상황지각, II번 질문은 결과지각, III번 질문은 책임지각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인권민감성 검사 대학생 및 성인용의 신뢰도 Chronbach's a는 .88로 보고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문항 당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을 받을 수 있고, 각 에피소드 당 세 질문 문항이 있으므로 한 이야기 당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본 설문에서는 10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으므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50점을 받을 수 있다. 인권민감성 전체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50점이며, 하위요인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0점을 받을 수 있다.

본 척도의 에피소드와 평가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 에피소드와 평가방법을 예로 살펴보면, 에피소드의 제목은 '황판사의 고민'으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항목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김씨는 형기가 합계 5년이 넘는 절도전과 5범으로 최근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되었으나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자로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감호처분을 내려 다시 보호감호소에 수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판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례에 대해 세 가지 질문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례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중요도에 대해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판사의 보호처분 후 예상되는 상반된 결과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위 사례의 담당판사가 자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상반된 행동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고 중요도는 각 질문문항에 대해 중요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민감성 내에 하위 에피소드에서 관련되는 인권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권민감성검사 내에 적용되는 인권항목

에피소드제목	관련인권항목
감원대상	평등권
김씨의 구속	불법체포, 구속하지 않을 권리
장애인학교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진료자 명단	정신장애인 사생활권
공장건립	환경권
황판사의 고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려씨의 임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국가의료정보센터 설립	사생활권
의사의 고민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권
가족회의	노인의 행복추구권

자료 분석방법은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data cleaning)을 한 후 SPSSWIN 1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종별 등 집단 간 인권민감성 차이를 보기위해 집단별 평균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집단과 일반인집단과의 인권민감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한계점

첫째, 연구대상자가 모든 부랑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님으로 전체 부랑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인권민감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측정도구에 있는 인권상황관련 에피소드 이외의 인권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5.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조사결과

인권민감성의 총점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평균값을 합한 결과이다.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N=390)

구 분	내 용	빈 도(비율)
성별	남	189(48.5)
	여	201(51.5)
연령	25세 이하	36(9.2)
	26세 - 29세	56(14.4)
	30세 - 35세	76(19.5)
	36세 - 40세	87(22.3)
	41세 이상	135(34.6)
교육정도	고졸이하	69(17.7)
	전문대학 졸	127(32.6)
	대졸	148(37.9)
	석사과정 재학	29(7.4)
	기타	17(4.4)
직책	원장	5(1.3)
	사무국장	15(3.8)
	상담부장	15(3.8)
	생활복지사	133(34.1)
	간호사	27(6.9)
	생활지도원	86(22.1)
	기타	85(21.8)
	무응답	24(6.2)
소유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94(24.1)

	사회복지사2급	104(26.7)
	사회복지사3급	2(.5)
	간호사	21(5.4)
	간호조무사	18(4.6)
	기타	84(21.5)
	해당사항없음	43(11.0)
	무응답	24(6.2)
현직장 경력	6개월 미만	31(7.9)
	6개월-1년	41(10.5)
	1년-2년	38(9.7)
	2년-3년	41(10.5)
	3년-5년	83(21.3)
	5년-10년	77(19.7)
	10년 이상	68(17.4)
	해당사항 없음	2(.5)

조사대상자는 총 309명으로 남성이 189명, 여성이 201명이었으며, 연령은 40세이상이 135명으로 비교적 연령이 높았으며, 36~40세가 87명, 30~35세가 76명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이 127명, 고졸이 69명 등이었다. 직책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인 생활복지사가 133명으로 가장 응답을 많이 하였으며, 생활지도원이 86명, 간호사가 27명이었고,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기획하는 사무국장은 15명, 원장은 5명이었다.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총 2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가 21명, 간호조무사가 18명 순이었다. 현 직장경력에는 3년~5년이 83명, 5~10년이 77명, 10년 이상이 68명으로 근무경력이 비교적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수관련 특성

〈표 4〉 인권교육 경험 유무

(N=390)

구 분	내 용	빈 도(비율)
학교교육과정 중 인권교육 이수경험	있음	150(38.5)
	없음	214(54.9)
현 직장 인권교육 경험	있음	120(30.8)
	없음	231(59.2)
현 직장 인권교육 참여방법	내부	92(23.6)
	외부	28(7.2)
현 직장 내부교육 참여방법	정기적	25(6.4)
	비정기적	67(17.2)
현 직장 내부 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13(3.3)
	3 ~ 5시간	3(.8)
	6시간 이상	4(1.0)

현 직장 내부 비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38(9.7) 11(2.8) 2(.5)
현 직장 외부교육 참여방법	정기적 비정기적	8(2.1) 20(5.1)
현 직장 외부 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2(.5) 3(.8) 2(.5)
현 직장 외부 비정기교육 참여시간	1 ~ 2시간 3 ~ 5시간 6시간 이상	12(3.1) 5(1.3) 4(1.0)
직장 내 생활인의 지침 or 권리장전 비치 유무	있음 없음	311(88.6) 40(11.4)
생활인의 지침 or 권리장전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교육 유무	있음 없음	184(59.2) 120(38.6)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인권관련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0명(38.5%), 없는 경우는 214명(54.9%)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내에서의 인권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은 120명(30.8%), 없는 경우가 231명(59.2%)로 시설 내에서의 인권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방법에서는 외부교육 없이 시설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92명(23.6%), 외부교육 참여는 28명(7.2%)이었다. 내부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2시간 정도의 단시간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 내의 생활인들을 위한 지침이나 권리장전 등은 부랑인시설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답자 중 40명(11.4%)은 시설 내에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인권관련지침이나 권리장전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입사초기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4명(59.2%), 없다는 경우는 120명(38.6%)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390명 중 약 40%가 가까운 종사자들이 생활인들을 위한 인권관련 지침이나 권리장전들이 시설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사자의 인권민감성 정도

〈표 5〉 종사자의 인권민감성 정도

(N=390)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인권민감성	64.55	27.86
상황지각	20.55	10.28
결과지각	21.81	10.21
책임지각	22.19	10.10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시설 종사자들의 총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이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해 보고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평균 93.90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2000년 부랑인시설평가에서 인권보호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결과를 보면 의식주 제공 등의 전통적인 생활시설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정기적인 사례회의, 질적인 삶을 위한 사회통합 등의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정원오, 2001) 특히 시설의 개방성이 총점 100점에 평균 68.18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밖에 안 되는 현실에 있다. 대체로 부랑인 시설은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부랑인 거의 대부분이 장기체류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생활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민감성은 생활인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과 태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다른 지각에 비해 종사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각의 평균이 더욱 낮은 본 연구결과와도 연관될 수 있다. 강지영(2002)은 상대방의 인권의식과 정서적 공감이 인권옹호행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서적 공감이 낮아 그들에 대한 인권의식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권민감성 정도

(N=390)

	구 분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F	M(SD)	F	M(SD)	F	M(SD)	F
연령	25세 이하	63.69 (27.26)	.081	19.75 (9.99)	.066	20.89 (9.45)	.362	23.06 (10.49)	.057
	26세-29세이하	65.14 (20.48)		21.02 (7.34)		21.57 (9.02)		22.55 (7.24)	

	30세-35세이하	67.99 (26.50)		22.00 (9.68)		22.62 (9.90)		23.37 (10.18)	
	36세-40세이하	69.38 (29.79)		22.25 (10.96)		23.34 (11.13)		23.78 (10.37)	
	41세 이상	59.50 (29.60)		18.66 (11.07)		20.70 (10.40)		20.13 (10.58)	
학력	고졸이하(a)	53.38 (28.84)	7.558.*** (a,c) (b,c) (c,ab)	16.67 (10.13)	6.499*** (a,c)	19.01 (10.77)	4.540** (a,c) (b,c)	17.70 (10.90)	8.745*** (a,cd) (c,ae) (d,a)
	전문대학 졸(b)	61.56 (25.71)		19.86 (9.73)		20.24 (9.46)		21.46 (9.26)	
	대졸(c)	72.44 (27.46)		23.05 (10.27)		24.30 (10.36)		25.09 (9.58)	
	석사과정 재학(d)	70.41 (27.07)		22.97 (9.70)		23.03 (9.76)		24.41 (9.84)	
	기타(e)	53.65 (23.26)		15.65 (9.68)		21.00 (8.31)		17.00 (9.05)	
성별	남성	65.42 (28.90)	.594	21.22 (10.68)	1.240	21.98 (10.57)	.331	22.22 (10.29)	.042
	여성	63.74 (26.89)		19.93 (9.88)		21.64 (9.88)		22.17 (9.94)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선 연령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김충희(2004)의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와 연관하여 김동성(2004)에 의해 연령별로 부랑인이나 시설에 대해 인식정도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력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졸이나 전문대학 졸자의 경우가 대졸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하위척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인권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와 정서적 능력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교육, 보건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원웅, 1996).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시설종사자들의 학력수준에 따른 다양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5) 직책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7〉 직책별 인권민감성 정도

직 책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F	M(SD)	F	M(SD)	F	M(SD)	F
관리자 (원장/ 사무국장) (a)	79.45 (28.70)	3.801** (a,de) (b,e)	25.50 (9.69)	4.044** (a,e) (b,d e)	26.45 (9.49)	1.687	27.50 (11.08)	4.555*** (a,de) (b,de)
상담부장 (b)	69.27 (18.70)		21.20 (8.65)		24.20 (7.63)		23.87 (7.59)	
생활복지사 (c)	69.41 (25.95)		22.70 (9.84)		22.32 (9.56)		24.39 (9.43)	
간호사(d)	58.30 (30.28)		18.22 (11.21)		20.74 (10.35)		19.33 (10.52)	
생활지도원 (e)	59.56 (26.95)		18.69 (9.69)		20.57 (10.73)		20.30 (9.16)	
기타 (f)	58.53 (29.55)		18.11 (10.81)		20.47 (10.62)		19.95 (10.87)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직책별 인권민감성의 경우에서 부랑인시설의 인권관련지침이나 인권교육을 주관하게 되는 원장이나 사무국장의 경우가 79.45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안 일상생활 속에서 부랑인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의 경우는 69. 27과 59.5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민감성 정도는 총점 15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정선영, 2006)이다. 이는 부랑인시설의 인권관련 규정을 지도감독하게 되는 실질적인 운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관리자와 간호나 및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부장과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지각에서는 관리자와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지각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에서는 관리자와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6) 부랑인복지시설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8〉 부랑인복지시설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

(N=390)

부랑인영역 경력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F	M(SD)	F	M(SD)	F	M(SD)	F
6개월 미만	60.71 (22.50)	.344	17.97 (8.89)	.542	21.81 (8.36)	.269	20.94 (9.04)	.254
6개월~1년 미만	59.51 (25.30)		19.71 (8.99)		19.51 (9.83)		20.29 (9.11)	
1년~2년	70.18 (30.45)		21.03 (11.19)		24.92 (11.70)		24.24 (9.87)	
2년~3년	63.27 (26.76)		20.68 (10.36)		21.24 (8.62)		21.34 (10.22)	
3년~5년	66.42 (33.04)		21.24 (11.74)		21.89 (11.80)		23.29 (11.61)	
5년~10년	66.29 (27.85)		21.78 (10.39)		21.95 (10.51)		22.56 (10.22)	
10년 이상	61.62 (24.03)		19.19 (9.31)		21.13 (8.76)		21.29 (9.16)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의 결과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은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이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면서 2~3년에 이르러 점수가 다시 낮아지고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매우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한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3년을 기준으로 장기경력자가 단기경력자에 비해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의 평균재직기간이 3~5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장기 근무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7) 학교교육과정, 근무 중에서 인권교육이수 유무별, 참여방법별 인권민감성 정도

〈표 9〉 학교교육과정, 근무 중에서 인권교육이수 유무별, 참여방법별 인권민감성 정도

(N=390)

과정별	인권교육이수경험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M(SD)	T	M(SD)	T	M(SD)	T	M(SD)	T
학교교육과정	있음	67.57 (29.30)	1.541	21.58 (10.68)	.341	22.56 (11.07)	.974	23.43 (10.11)	.914
	없음	62.96 (27.15)		20.04 (10.03)		21.49 (9.74)		21.43 (10.22)	
현직장	있음	71.38 (28.76)	2.799**	22.56 (10.34)	2.191*	24.13 (10.95)	2.492*	24.69 (9.82)	2.989**
	없음	62.56 (27.60)		20.01 (10.35)		21.24 (9.98)		21.32 (10.15)	
현직장 인권교육 참여방법	내부	70.45 (28.60)	-.646	22.57 (10.37)	.013	23.52 (10.88)	-.378	23.96 (9.85)	-1.495
	외부	74.46 (29.58)		22.54 (10.40)		24.82 (11.36)		27.11 (9.49)	
현직장 내부 교육 참여방법	정기적	73.52 (26.75)	.628	23.68 (9.43)	.628	23.68 (10.32)	-.131	26.16 (9.77)	1.316
	비정기적	69.30 (29.38)		22.15 (10.74)		24.01 (11.16)		23.13 (9.82)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현 시설에 종사하기 전 학교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 내에의 인권교육 유무별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직접대면하게 되는 현장에서의 교육이 더욱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과 더불어 부랑인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육방법에서는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육방식과 시설 외부의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교육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시는 정기적인 경우와 비정기적인 교육실시 역시 차이가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인식은 법조항에 의한 규정이나 교육에 의한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여 지는 실천적 의미의 인권인식에 기반한다(Misgeld,1994). 즉 인권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 내용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딜레마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8) 시설 내 권리장전(지침)유무별 인권민감성의 정도

〈표 10〉 시설내 권리장전(지침) 유무별 인권민감성의 정도

(N=390)

구 분		인권민감성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권리장전(지침)		M(SD)	T	M(SD)	T	M(SD)	T	M(SD)	T
유무	있다	67.20 (28.06)	2.522*	21.61 (10.36)	3.032**	22.57 (10.47)	1.397	23.02 (9.97)	2.483*
	없다	55.33 (27.73)		16.38 (9.52)		20.13 (9.96)		18.83 (10.77)	

※ 인원민감성 총점150점 * p<.05 ** p<.01

시설 내의 권리장전이나 지침 유무별 인권민감성 차이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인권민감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인권상황으로 의식하는 상황지각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책임지각에서 인권민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시설 내에는 권리장전이나 지침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랑인에 대한 권리장전이나 관련지침 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장전이나 관련지침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6. 결론 및 제언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시설 종사자들의 총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평균 64.55이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해 보고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평균 93.90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대체로 부랑인복지시설은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부랑인 거의 대부분이 장기체류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생활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민감성은 생활인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과 태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선 연령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김충희(2004)의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와 연관하여 김동성(2004)에 의해 연령별로 부랑인이나 시설에 대해 인식정도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력별 인권민감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졸이나 전문대졸자의 경우가 대졸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상황지각, 결

과지각, 책임지각 각각의 하위척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직책별 인권민감성의 경우에서 부랑인복지시설의 인권관련지침이나 인권교육을 주관하게 되는 원장이나 사무국장의 경우가 79.45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안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인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의 경우는 69. 27과 59.5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민감성 정도는 총점 15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이며, 일반인의 70.8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정선영, 2006)이다. 이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인권관련 규정을 지도감독하게 되는 실질적인 운영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관리자와 간호사 및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담부장과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지각에서는 관리자와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지각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지각에서는 관리자와 간호사, 그리고 생활지도원 집단 간과 상담부장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경력별 인권민감성 정도의 결과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은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이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면서 2~3년에 이르러 점수가 다시 낮아지고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매우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선영(2006)에 의한 연구결과 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3년을 기준으로 장기경력자가 단기경력자에 비해 낮은 인권민감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현 시설에 종사하기 전 학교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 내에의 인권교육 유무별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인권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의미한다. 교육방법에서는 시설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육방식과 시설 외부의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교육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실시는 정기적인 경우와 비정기적인 교육실시 역시 차이가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시설 내의 권리장전이나 지침 유무별 인권민감성 차이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인권민감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인권상황으로 의식하는 상황지각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책임지각에서 인권민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시설 내에는 권리장전이나 지침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랑인에 대한 권리장전이나 관련지침 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랑인시설에서의 인권교육에 따른 인권민감성의 차이라는 연구결과는 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 정도가 일반인보다도 현격히 낮다는 점에서 더욱 실질적인 인권교육의 경험이 종사자들에게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실천유형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클라이언트가 갖는 권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기수, 2006). 특히 부랑인복지시설에 부랑인의 시

설 내 재원기간이 평균 3,107일로 정신요양시설의 2,601.5일에 비해 1.2배이고 정신의료기관의 566.6일에 비해 5.5배에 달하는(2003. 이병조)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인권관점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부랑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랑인복지시설 내의 인권관점유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는 부랑인복지시설평가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교육부분과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정기적 평가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인 인권수준을 결정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직책별 인권민감성의 경우를 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 내 규정을 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게 되며,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위한 자체지침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관리자인 원장 및 사무국장의 인권민감성은 총점 150점에 약 50% 수준인 79.45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부랑인복지시설 생활인인 부랑인에 대한 시설장의 인권인식에서 대부분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만으로 인식하고 있고 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성폭행 정도만 없으면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부랑인을 직접 대면하면서 활동하는 종사자인 생활복지사나 생활지도원, 간호사의 경우 인권민감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시설지도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낮은 인권의식은 각 시설 내의 생활인인 부랑인의 인권적 보호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인 관리자들이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인권의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부랑인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나 학력수준에 따라 인권민감성 정도의 차이는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시 일률적인 교육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근무 경력(기간)별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면 1년 미만의 경우에 가장 낮은 인권민감성 정도를 보이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높아지면서 2년이 지나 3년을 넘기면 다시 점수가 낮아지는데 10년을 넘기게 되면 아주 낮은 인권민감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선영(2006)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장기근무자의 매너리즘과 소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해결책과 더불어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교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시설 내에의 인권교육 유무별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낮은 70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시설 내 인권교육실시방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계획 된 정기적인 방법과 비정기적인 교육방법이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인권교육의 비효율성과 총체적인 부실교육을 의미한다. 인권옹호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인식은 법조항에 의한 규정이나 교육에 의한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저절로 배여 지는 실천적 의미의 인권인

식에 기반 한다(Misgeld,1994). 즉 인권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 내용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딜레마상황, 무엇이 인권을 옹호하는 판단이고 행동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2006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및 프로그램개발연구에 의하면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경우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별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을 클라이언트 당사자에게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설생활인의 경우에는 인권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교육하고 자기주장훈련, 의사소통훈련, 그리고 자존감향상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옹호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사들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침해상황과 관련된 사례나열식 인권교육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권상황에 대한 정서적 자극을 촉진시키는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교육과 함께 인권침해 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인권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인권상황을 판단하게 인지와 정서적 능력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교육, 보건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이원웅, 1996)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랑인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동반되어야 한다. 시설화된 부랑인은 스스로를 옹호하는 행위가 적고 인권민감성이 낮은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대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옹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랑인 스스로의 자기옹호능력 향상은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부랑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지영. 2002. “인권에 대한 인지능력과 정서적 공감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2001.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 공공분야 인권교육 교재개발시리즈.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지표 개발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보고서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실 편.

국가인권위원회. 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엘리자베스 라이커스 저. 2008. 『사회복지와 인권』.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국회인권포럼. 1998.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정책방향”.

권영성. 1999.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기수. 2006.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성. 2004. “부랑인의 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부자. 2004. “정신과 간호사, 비정신과 간호사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범수. 1991.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론』. 서울: 범론사.
김성이. 1990.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모델 개발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승한. 1981. 『한국의 평생교육론 서설』. 서울: 민음사.
김충희. 2004.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준. 2007. “시설부랑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옥. 1999. “한국・미국・일본의 부랑인 발생원인과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혜정. 2002.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용린・문미희・곽윤정. 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연구”. 서울대학교[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박태영. 2001. “부랑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적 과제”.『사회과학연구』9(3): 349-374.
사회권 연구모임. 2002. 사회권 보장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서순자. 1991.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 간호사의 태도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양옥경. 2007.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관점의 중요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콜로키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한국사회복지학회. pp. 27-43.
신명호. 2002.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윤수철. 2005. “학교연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00. “정신장애인의 인권운동”.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이병조. 2003.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의 재원기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이용호. 1981.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 3권.
이원웅. 1996. “현대인권이론의 전개와 쟁점”.『현대사회』서울: 현대사회연구소. 43: 112-129.
이윤구. 1987. “부랑인복지와 교회의 역할”.『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이태수. 2002. “부랑인복지시설의 나아갈 방향”.『부랑인복지세미나』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11: 13-33.
이현준. 2003.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기능평가에 따른 서비스 개선방안”.『부랑인복지 세미나』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12: 73-93.
정선영・백형의. 2005. “정신보건 영역 자원봉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정신보건과 사회사업』21: 60-89.
정선영. 2006.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23: 59-87.
정선영・손덕순・백형의. 2008. “부랑인시설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정신보건과사회사업』 28: 67-95.
정원오. 2001. “부랑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6: 47-58.
정원오. 2002. “부랑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pp. 502-559.
주한수.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분석”. 영남대교육대.
차흥봉. 1987. “부랑인복지의 실태와 대책”. 『1987년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토론 및 연구발표 요

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4.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8.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허남순 · 한인영 · 김기환 · 김용석. 2004.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기술』. 서울: 나눔의집. p. 367.
황정규(1979), '한국학생의 인식구조',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Anderson, O. 1958. "Infant mortality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 Historical trends and current patterns in Patients, Physicians and Illness", *1st ed. Ed by Jaco EG, New York, The Free Press*.
Arce, A. A., Tadlock, M., Vergare, M. J. and Shapiro, S. H. 1983. "A psychiatric profile of street people admitted to an emergency shelter", *Hosp. Community Psychiatry* 34: 812-817.
Bassuk, E. L., Rubin, L. and Lauriat, A., 1984. "Is homelessness a mental health problem?", *Am. J. Psychiat* 141: 1546-1550.
Braford. W. Sheafor(2004), 'Technique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Cohen, J. and Struening, E. L. 1964.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 Hospital social atmosphere profiles and their relevance to effectiveness", *J Consult Psychol* 28: 291-298.
John C. Connell," A RIGHT TO EMERGENCY SHELTER FOR THE HONELESS UNDER THE NEW JERSEY CONSTITUTION", HeinOnline -- 18 Rutgers L. J. 765: 1985-1987.
K. Scott Mathews "THE HOMELESS IN THE 1990s: WHAT ROLE WILL THE COURHS PLAY"? HeinOnline -- 60 UMKC L. Rev 343: 1991-1992.
Lemkau, P. V. & Crocetti, G. 1962. An Urban population's opinion and knowledge about mental illness, Amer. J. Psychiat. 118:692-700.
Manning, S. S. and Gaul, E. G.(1997). "The Ethics of Informed Cosent : A Critical Variable in the Self-Determination of Health and Mental Health Clients", *Social Work In Health Care* 25(3): 103-117.
Marilyn Reitz-Pustejovsky, "Is the Care We Provide Homeless People, Just? The Ethic of Justice Informing the Ethic of Care",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vol. 11, No. 3, July 2002.
Maureen Crane and Anthony M. Warnes, "RESPONDING TO THE NEEDS OF OLDER HOMELESS PEOPL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British services, lnnovation, vol. 18, No. 2, 2005.
Mechanic, D. and Volkart, E. H. 1960. "Illness behavior and medical diagnosis", *J. Health Human Behav* 1: 86-94.
Micha de winter and Marc Noom, "Someone who Treats you as an Ordinary Human Being... Homeless youth Examine the Quality of Professional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03) 33: 325-337.
Mickelsons, James(1995), 'Advocacy.',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 Vol. 1, 19th ed., edited by Richard L. Washington D.C. : NASW Press
Middleton, J. 1953. "The prejudice and opinions of mental hospital employee regarding mental illness", *Am J. Psychiatry* 110: 133-138.

Millon, Y. 1975. "Medical Behavioral Science", *Philadelphia W B Saunders* 531-542.

Misgeld, D.(1994). "Human Rights and Education : Conclusion from some latin American exper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3).

Patricia Siebert, "Homeless People: Establishing Righs to Shelter", HeinOnline -- 4 law & Ineq. 393. 1986.

Peter. J. (1994), 'Rights, Houndsmil : Macmillan.

Rabkin, J. G. 1972. "Public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chizophr Bull* 10: 9-33.

Rest, J. R.(1983). Morality. In P. H. Messen(series Ed), J. H. Flavell and E. M. Markmen(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556-562.

Schneider Robert. L(2002), 'The biotic ligand model: a historical overview'.

Sigrun I. Skogly, "IS THERE A RIGHT NOT TO BE POOR?", Hunas Rights Review-Volume 2, Number 1-2002.

Sleegers, J. 1998.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homeless adolescent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7(4).

Stoner, R. 1995. "The Civil Rights of Homeless People : law,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 aldine de gruyter*.

Tessa Swithinbank, "THE STREET PRESS: homelessness, self-help, and social identity", Gender and Development ISSN 1364-9221, Vol 5, No. 3, November 1997.

Wendy E. Hovdestad, "Seeking Justice: The Strategy of the National Social Action Program ",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vol. 10. No. 1, 2001.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in the Vagabond Facilities

Jung, Sun-Young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Kong, Sang-Gil
(Kangnam University)
Im, Eun-Kyung
(Sung-Kong-Hoe University)
Chun, Duk-Hee
(Tongwon College)
Oh, Young-Rim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did by purpose to be utilized to basic data for elevation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homeless facilities employees through examining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by investiga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hat can grasp degree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homeless facilities employees.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390 homeless facilities employees who are working at 38 facilities around the whole country is compared and investigated.

As a result,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displayed very low score by average 64.55 points in total score 150 points.

Human rights sensitivity academic career of employees was shown meaningful difference,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substantial administrator is appeared very low in human rights sensitivity by duties.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homeless facilities, the employs who had got human rights education shows higher human rights sensitivity than the employs who had not go human rights education.

Therefore, regular program that can enforce human rights education collectively as a formal curriculum in homeless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t's proposed to develop practical and efficient human rights education manual case by case related with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Key words: homeless, homeless facilities, human rights sensitive and the advocacy of human rights.

〔논문접수일: 09. 10. 06, 심사일(재심사): 09. 10. 27(12.09), 게재확정일: 10. 01. 08〕